NYC 인권법은 Section 8 및 기타 정부 보조 수혜자를 주택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.

여섯(6) 가구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,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이 불가합니다.

- Section 8을 비롯해 연방, 주 또는 지역 공공 또는 주택 보조를 이유로 아파트 임대를 거부
- 신규 또는 기존 세입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Section 8을 비롯해 연방, 주 또는 지역 공공 또는 주택 보조 승인을 거부하고 임대료 지급을 요구
- 프로그램 승인을 거절하는 문구가 삽입된 온라인 또는 신문 광고를 포함한 광고 인쇄 및 게시

건물 내 가구 수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집주인은 임대 보조금을 승인해야 합니다.

- 집세 통제중인 아파트이며, 2008년 3월 법률의 유효 시부터 거주하고 있을 경우
- 집주인이 NYC 내 6가구 이상의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뉴욕시 인권법

주택 차별로부터 Section 8 바우처 소지자를 보호합니다.

아파트를 거부당했거나 집주인이 Section 8 또는 기타 정부 보조 바우처를 거부했다면, **311** 의 번호인 **NYC 인권법 위원회**의 법률 집행부로 연락해야 합니다.

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
Bill de Blasio, Mayor
Patricia L. Gatling, Commissioner/Chair
www.nyc.gov/cchr